

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융자·보증지원 안내문

- **(지원목적)** 태풍, 집중호우, 폭설 등 자연재해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재해 업체에 복구자금 융자(보증) 지원으로 생계 및 경영 안정 도모
- **(신청기간)**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
- **(신청장소)**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
- **(신청대상)** 자연재해로 물적 피해*를 입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
※ 물적 피해란? 건축물, 원재료, 완제품, 생산설비 피해에 한 함
- **(지원내용)** 매출액, 피해금액 등을 평가하여 융자(보증) 지원

구 분	지 원 내 용
자 금	(중소기업) 최대 10억 이내, 2.7% 고정금리 , 2년 거치 3년상환
	(소상공인) 최대 7천만원 이내, 2.7% 고정금리 , 2년 거치 3년 상환
보 증	(중소기업) 최대 5억원 이내 특별보증(90% 보증 , 수수료 0.1%)
	(소상공인)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 , 수수료 0.1%)

※ 소상공인이란?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기타 업종 5인 미만

- **(지원절차)**
 -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서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후에 「재해 중소기업 확인증」을 발급
 -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지참하여
 - (중소기업)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·융자 지원
 - (소상공인)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*, 보증 상담
- * 은행에 제공할 담보가 있는 경우, 확인증 지참하여 주거래은행 융자 상담

□ (문 의 처)

- 중소기업청 : 비상안전담당관실 ☎ 042-481-6871
- 지방자치단체 : 관할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 기업지원과

자연재난 피해신고서(중소기업 · 소상공인)

(앞쪽)

1. 피해자 정보

주 소(사업장)	시·군·구	대로·길	번	(동,)
성명(대표자/업체명)	/ (주민등록번호: -)			
주거래은행 계좌번호	은행명(지점명): (지점)		계좌번호: 예금주:	
연 락 처	전화번호:		휴대전화: (통신사명:)	

2. 피해 내용

※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피해 발생 위치	시·군·구				대로·길	번	(동,)
기업구분	[] 중소기업 [] 소상공인		총면적		m ²		
사업자등록번호	- -						
피해시설명	① 건축물	② 기계시설	③ 완제품	④ 원재료	합 계		
피해금액 (단위:천원)	신고	①	②	③	④		
	확정	①	②	③	④		
피해 구분							
피해 원인							
용자·보증 신청 여부	[]						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(主)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· 활용 동의
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용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주(主)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,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-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용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,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용자받은 복구자금 등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

(인) 피해자와의 관계 [대표이사, 임·직원, 기타]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읍 · 면 · 동장)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 방법

1. 피해신고 대상

-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(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)
-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납부유예 및 감면, 통신요금 감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식별을 위해 기입합니다.
- 중소기업의 경우, 주거래 은행 정보를 기입생략. 다만,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해 주거래은행 정보를 반드시 기입합니다.
- 건축물(붕괴, 지붕·벽체·출입문 등 파괴), 원재료(침수, 파손), 완제품(침수, 파손), 생산설비(침수, 파손) 등 모두 4종의 피해에 대해서만 신고(소상공인의 경우, 건축물 피해에 침수로 인한 장판, 도배지 등의 피해에 대해 포함 작성).

2. 피해신고 제외 대상

- 건축물의 단순 균열, 재해로 인한 휴업·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

3.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[]에는 해당 사항에 ○표 또는 √ 하시기 바랍니다.

4.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,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.

4.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/매물/전파/반파/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

5.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.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